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38

발의연월일: 2020. 11. 2.

발 의 자: 추경호・金炳旭・김영식

한무경 · 김정재 · 서일준

박덕흠 • 홍준표 • 이양수

김희국 • 이 영 • 정운천

의원(12인)

제안이유

코로나19로 내·외국인의 입출국이 제한되면서 막대한 영업 손실과 종사자의 대량실직 우려로 면세산업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매출이 발생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감면 근거가 없어 특허수수료를 정상 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실정임.

특허수수료는 특허를 통해 얻는 독점적 권리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그 독점적 권리의 경제적 가치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및 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결정됨.

그러나 현재처럼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독점적 권리의 경제적 가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어 시장 급변에 따른 특허 가치의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면세산업은 대규모 수출·유통산업으로서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국가산업인만큼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함.

이에 재난 발생 등 본래의 특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보세판매장 특허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납부 체계를 갖추고자 함.

주요내용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으로 인한 영업 손실이나 그 밖에 본래의 특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시 특허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6조의2제4항 단서 및 제1호·제2호 신설). 법률 제 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영업에 손실을 입은 경우
- 2.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보세판매장 특허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 ③ (생 략)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	
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u><신 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u><신 설></u>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으로 인하여 영업에 손실을 입은 경우 2.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 래의 보세판매장 특허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⑤ ~ ⑧ (생 략)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 수 ⑤ ~ ⑧ (현행과 같음)